

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.

발의자 : 박홍근 · 기동민 · 신창현  
이규희 · 맹성규 · 강훈식  
박찬대 · 조정식 · 윤일규  
최재성 · 남인순 · 임종성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, 교통안전수칙, 응급처치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, 최근 빈번하게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호의2.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 1. ~ 4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 -----  -----  -----  ----.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<u>4의2.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</u>  <u>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</u>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